

건축물철거·멸실신고서

• 어두운 란(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 쪽)

허가(신고)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
			1 일
신고번호	제	호	건축물등록번호

건축물	위치	
	용도	구조
	건축물수	연면적 합계
	세대수	

소유자	성명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

공사시공자	성명	건설업면허번호
	(서명 또는 인) 주소	

철거 또는 멸실	사유																
	철거일자						년 월 일부터			년 월 일까지			멸실일자			년 월 일	

등기촉탁 희망여부	[] 희망함 [] 희망하지 않음	
석면함유재 존치여부	[] 천장재(아스칼텍스, 아미텍스 등)	[] 바닥재(아스타일 등)
	[] 지붕재(슬레이트 등)	[] 파이프보온재(석면포)
	[] 천정단열재(석면포)	[] 기타
오수처리시설 철거여부		[] 철거함 [] 철거하지 않음

※ 착공신고 관련사항 (※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.)

건축주	착공예정일자		년	월	일
설계자	사무소명	성명	(서명 또는 인)		
	(신고번호 : 자격번호 :)				
시공자	회사명	성명	(서명 또는 인)		
	(면허 · 지정 · 등록번호 :)				
공사감리자	사무소명	성명	(서명 또는 인)		
	(신고번호 : 자격번호 :)				
관계전문 기술자	분야	자격증(자격번호)	주소		
	() (서명 또는 인)				
	() (서명 또는 인)				
	() (서명 또는 인)				

「건축법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년 월 일

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안내					
제출하는 곳	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	처리부서	건축허가부서		
첨부서류	1. 해체공사계획서(총별·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,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,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규정합니다) 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(건축물철거·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 가. 「건축법」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나. 시방서, 실내마감도, 건축설비도, 토지굴착 및 옹벽도(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다.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(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써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	수수료 없음		
근거법규					
「건축법」 제36조	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				
유의사항					
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24조, 「건축법」 제113조제2항 제4호	1. 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·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2. 건축물철거·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				
처리절차					
신고서 작성	접 수	검 토	결 재	신고필증 작성	발 급
< 신고인 >	<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 건축허가부서 >			< 신고인 >	